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나57086 판결 [건물명도]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나57086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1306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9. 27.

판결선고 2024. 10. 11.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2가단1306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3. 6. 9.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임을 표시하기 위해 피고의 주소를 ‘최후주소’로 표시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또한 2023. 6. 1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3. 9. 21. 이 사건 판결 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한 이후인 2024. 5. 1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3. 9. 21. 이 사건 판결 정본을 발급받을 당시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부터 2주일이 도과한 이후임이 명백한 2024. 5. 14.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완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송승훈, 판사 이종채

별지